

3.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법률 제5,561호. 1998. 9. 16

개 정 이 유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매각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증권투자회사 및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등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한 경우 부채에 비하여 자산이 부족한 때에는 그 부족분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신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 요 골 자

- 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간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부동산의 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법 제40조의10).
- 나.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 또는 화의인가결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차입금의 상환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기업이 차입금을 감액하여 조기상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차입금감소액은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40조의11).
- 다. 부실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 또는 자산처분명령등에 의하여 보유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고, 예금보험공사

- 및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법 제40조의 12).
- 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 또는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는 경우 부채에 비하여 자산이 부족하고 그 부족분을 예금보험공사가 보전하여주는 때에는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법 제40조의13).
- 마.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증권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중 90퍼센트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증권투자회사가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하도록 함(법 제40조의14 및 제111조의2제6호).
- 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회사가 이로 인한 투자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투자손실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동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이 증권투자회사에 출자한 자가 동 증권투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함(법 제40조의15).
- 사.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법 제40조의16, 제113조 및 제114조)
- 아. 신축주택을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간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함(법 제67조의3).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5제1항제1호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의한 일간신문 발행법인”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

간신문 발행법인(이하 이 조에서 “일간신문 발행법인”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2항중 “사채발행에 대한 보증을 포함한다”를 “사채발행에 대한 보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보유”를 “주식양도일 현재 보유”로 하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양도대상법인이 일간신문 발행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차입금으로서 당해 법인의 주식양도일 현재 인수·변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1997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입금으로서 당해 주주가 보증한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40조의7의 제목중 “법인세과세특례”를 “법인세 등 과세특례”로 하고, 동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음으로써 당해 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의8제1항중 “교환함에”를 “교환(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수 법인간의 교환을 포함한다)함에”로 한다.

제2장제5절에 제40조의10 내지 제40조의16

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10(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① 제33조의2제1항·제40조의3제1항·제40조의6제1항 및 제40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이라 한다)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가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확인 및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11(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에 따른 채무감소액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①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금융기관(제40조의5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 한한다)으로부터 차입금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감면받는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채무감소액”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채무감소액은 당해 사업년도 및 그 후의 각 사업년도에 법인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된 결손금은 동법 제8조제1항제1호·제15조제2항 및 제3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된 금액으로 본다.

1.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의 규정에 차입금의 만기연장·금리인하 등 대출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의 결정

에 따른 차입금의 현재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의 결정에 대출조건이 완화된 차입금의 현재가치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상환하고 차입금과 상환하는 금액의 차액을 면제받았을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현재가치는 금융감독원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일 것

②금융기관이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한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차입금의 상환 및 면제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12(금융산업구조개선에 따른 부동산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①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이하 이 조와 제40조의13·제111의2·제113조 및 제114조에서 “적기시정조치”라 한다)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이하 이 조와 제40조의13·제111조의2·제113조 및 제114조에서 “계약이전결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유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과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예금자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동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제40조의13에서 “인수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과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액감면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13(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적기시정조치(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인수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전받은 부채의 가액중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순부채액”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1. 인수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순부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받을 것
2. 인수금융기관이 이전받은 자산과 부채의 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확인한 가액일 것

제40조의14(증권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동법 제79조의 적용을 받는 증권투자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증권투자회사”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증권투자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0조의15(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

정 증권투자회사(이하 이조와 제111의2 및 제114조에서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라 한다)가 동법 제7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유가증권투자손실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중 적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유가증권 투자금액에서 유가증권투자손실준비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

②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투자손실준비금과 손실의 상계, 준비금잔액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

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가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1항각호의 요건(이하 이 조에서 “감면요건”이라 한다)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 당해 사업년도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제5항과 제111조의2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가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 또는 매출외의 방법으로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때에는 그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 감면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16(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유동화전

문회사”라 한다)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까지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22일부터 1999년 6월30일 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사이 사용승인 또는 사용 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②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중 “양도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토지 및 제40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로 한다.

제111조의 본문중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중 “지분”을 각각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로 하며, 동조에 제3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부실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양도하거나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받은 금융기관이 다시 이를 양도하는 경우
- 4.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4호 또는 동법 제3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5. 성업공사가 부실금융기관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6.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7.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가 증권투자회사법 제78법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

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주권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

제113조제1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성업공사,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또는 계약이전 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
- 11.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다음 각목의 자산에 관한 등기
 - 가. 부동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 나.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인 경우에는 당해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제114조제1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성업공사,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

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 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10.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

제11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해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동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40조의6·제40조의7 및 제40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인수,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3.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가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주권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4.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제119조제1항 및 제120조 본문중 “제43조”를 각각 “제40조의10·제43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여세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7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산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40조의12·제40조의16·제67조의3·제78조·제119조제1항 및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법인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40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법인을 양도·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0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채무를 면제하거나 면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40조의1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40조의14 및 제40조의15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40조의1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유가증권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급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0조의1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거나, 배당금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증권거래세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등록세 및 취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 및 제1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기존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양도

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특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1998년 6월 29일에 행한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양도하는 부동산·주권 또는 지분에 대한 특별부가세 또는 증권거래세, 동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이전받는 자산·부채에 대한 법인세와 동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에 관하여는 부칙 제4조·제5조·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0조의12제1항·제40조의13·제111조의2·제113조 및 제11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호의3·제7호의2 및 제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14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 7의2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8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제114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또는 취득세의 감면